

의안번호	제 323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자	한창동 의원 외 7인
발의연월일	2009년 3월 9일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23
------------	-----

발의년월일 : 2009년 3월 9일
 발의자 : 한창동, 김법기, 최재옥,
 박종갑, 권광택, 장주식,
 송은섭, 강태원

1. 제안이유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 개발기관 및 의료 연구 개발지원기관 등에 대한 재정·세정 등 수준 높은 지원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3조~제9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확보 및 운용(안 제12조~제16조)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재·세정 지원(안 제17조~제31조)

3. 조례안 : 별첨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 별첨
- 예산조치 :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 재원확보
- 관련부서 협의 : 예산담당관실, 법무통계담당관, 세정과, 회계과,
 투자유치과, 바이오사업과, 청원군과 협의됨
 ※ 협의결과는 붙임과 같으며, 검토결과를 본 조례에 반영하였음.
- 규제관련 사항 :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국내·외 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발전과 우리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란 의료연구개발의 활성화와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지를 말한다.
2.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를 말한다.
4. “보건의료기술”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을 말한다.
5. “의료연구개발”이란 의약품, 의료기기 또는 보건의료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연구·개발을 위하여 임상시험을 하는 것, 임상시험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나 의료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의료연구개발의 연구인력과 시설 등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에 맞는 기관을 말한다.
 - 가.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 나. 의료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1) 의료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 (3) 연구기관
 - (4) 정부출연기관 등
7.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8.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아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 설치

제3조(지원위원회 설치)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관한 중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
2.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주기관지원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 관련 실·국장
2.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도의원
3. 입주기관·단체의 임원
4. 바이오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5. 기타 첨단의료복합단지관련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입주기관지원관련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과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과 관련단체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 등) ① 도지사는 입주기관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협회, 컨설팅사 등 관련 기관이나 전문회사·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와 입주기관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입주기관지원정책의 수립 및 기관지원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 기관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내·외국인으로 구성된 충청북도 입주기관 지원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관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지원) 자문단 소속의 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 참석수당과 국내·외 출장비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자문료는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지원기금 운용

제12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지원 기금)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첨단의료복합단지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청원군의 출연금
2. 지방채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차입금과 기타 잡수입

③ 도지사와 청원군수는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 모두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분양과 임대용 토지의 매입
 2.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부지매입비 용자와 보조금 지원
 3.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부대시설 설치비 등 지원
 4.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연구개발비 등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금의 용자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균형발전국장, 기금출납원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② 기금의 집행은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17조(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과 관련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지방세법」과 「충청북도 도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입주지원)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

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려는 기관 등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과 입주 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충청북도민을 고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충청북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관이 충청북도민을 고용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충청북도민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채용하고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①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개발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인프라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 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인근에 입주할 경우 기본적인 인프라인 진입도로와 용수시설, 폐수종말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지원) ① 충청북도와 의료연구개발

기관,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연구용 세포 등을 보관·관리하는 기관
 - 나. 실험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 라.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③ 도지사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 모두의 투자조합 결성이거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26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도지사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도지사는 입주기관 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28조(수도권 기관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수도권안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지방 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하 "지원기준"이라 한다.)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비·시설장비구입비·기반시설설치비 등(이하 "투자"라 한다.)을 포함한 투자 보조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타 시·도 기관 이전비 지원) ① 도지사는 타 시·도에 소재하는 기관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해당 기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과 주사무소용 건물이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될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 될 경우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건물 건축시 : 토지매입비와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시 : 건물취득비

3. 건물임대시 : 임대료

③ 기관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기관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연구소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시설장비 구입과 이전비용을 포함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첨단의료복합단지내 증설시 시설투자비지원) 도지사는 첨단의료복합단지내 소재 기관이 별표 2의 지원기준에 따라 기관을 증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각각 포함하여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에 대하여 5퍼센트 범위에서 기관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1. 기관 신규증설의 경우 :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2. 기존기관 부지에 증설하는 경우 : 건축비, 시설설치비 포함

제31조(투자기관에 대한 특별지원) ① 도지사는 투자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특별 지원할 수 있다.

1. 1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이고,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투자기관
 2. 그 밖에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 근로자들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 정착을 위하여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지원한도)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관당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보조

제33조(시·군의 이전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분담 등) ① 도지사는 이전기관 및 도내증설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원군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청원군의 지원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군이 분담하는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청원군수와 협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② 청원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

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도지사는 기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과 기관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관지원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입주기관의 이행여부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원을 받은 입주기관이 입주 후 타 업종으로 전환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혀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기관을 가동하거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거나, 융자금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기관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기관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 한 때
6. 보조금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7.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계약 후 10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8. 교육훈련보조금 ·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 못하는 경우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보조금과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 ·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도권안 대상지역(제28조 관련)

구 분	대 상
수 도 권	<p>◆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중구 운남동·운북동·운서동·중산동·남북동·덕교동·을왕동·무의동, 연수구 송도 매립지* 제외)</p> <p>* 송도매립지는 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 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p> <p>◆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파동·이파동·삼파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p> <p>◆ 위 대상지역에 해당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낙후지역”은 제외</p>

[별표 2]

타시·도 기관이전 및 단지내 공기관 증설 지원기준(제29조 및 30조 관련)

구 분	대 상	지원기준 및 지원업종
타시·도 기 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중 별 표 1을 제외 한 지역 및 시·도에 소재 한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및 타 시·도에서 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개발 지원기관(기관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 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3년 이상 사업 영위 사실을 기관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 이전기관 대상 및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개발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의료연구개발 기관 및 개발지원기관의 전부(본사 또는 공장) 또는 일부가 (본사 또는 공장)이전 하는 경우 상시 고용 인원이 50인 이상 <기관부설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규모가 50인 이상, 이전 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고용구모가 30인 이상, 이전 후 고용규모 30인 이상 <집단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규모가 50인 미만인 서로 다른 의료 연구개발기관 및 개발지원기관이 2개 이상 집단화 하여 이전하는 경우
단지내 기관	◆ 단지내 소재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 지원기관 ○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에서 3년 이상 기관을 운영 중이고, -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관

관 계 법령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을 위한 소관 사항의 추진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방안을 종합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되,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운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방안 중 추진일정 및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제27조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운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의 기본 방향과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과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우수 연구인력·의료연구개발기관의 유치 및 정주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7.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 성과의 활용 및 전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등의 설립 및 지원) 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출연기관은 공동으로 출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1. 의약품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고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약품을 연구개발하는 기관
 2. 의료기기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의료기기를 연구개발하는 의료연구개발 기관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하거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의료 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기관
 3. 그 밖의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가. 연구용 세포 등을 보관·관리하는 기관
 - 나. 실험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기관
 - 다.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생산하거나 생산시설을 제공하는 기관
 - 라. 그 밖에 의료연구개발 관련 자원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복합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2 이상의 성격을 가지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연구서비스의 제공 수준, 연구성과의 향상 정도,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투자조합의 결성이거나 회사의 설립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2조(공동연구개발사업 지원) ①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과 의료연구개발기관은 공동으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의 시설·인력 등을 활용하여 일정 기간 의료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이하 "공동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 자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사업의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을 배분하거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술이전을 할 때에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융자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수행하는 의료연구개발에 대하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기업 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중 산업기반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를 할 때에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하여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하는 금액 중 원리금 상당금액을 제외한 부분은 「이자제한법」 제4조에 따른 간주이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성공 및 실패의 기준, 융자의 대상 및 조건, 융자의 절차 및 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 (입주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첨단의료복합 단지에 입주하려는 자에 대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 (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숙소, 편의시설, 탁아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연구개발지원 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공유재산의 사용·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을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및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에게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입지 선정의 세부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우수 의료기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 연구인력 : 의료연구개발에 관한 논문을 국내외에 게재하거나 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의료연구개발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연구인력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 : 총매출액 대비 의료연구개발비의 비율이 높거나 의료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등 의료연구개발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연구개발기관
3. 우수 의료기관: 국내외 기업 등으로부터 임상시험을 위탁받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유치 및 정주(定住) 가능성,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集積)·연계 정도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 및 정주 가능성 : 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우수 연구인력과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환경, 문화, 교통 등의 정주 여건을 갖추고 있거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기간 내에 정주 여건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2.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집적 정도 :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포함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구역 안에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과 우수 의료기관의 수가 많을 것
3. 우수 의료연구개발기관의 연계 정도 : 협약 체결 건수 등 국내외 의료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또는 교류를 통한 연구개발·연구활동 등의 수행 실적이 많을 것
4.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내용 :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의료연구개발기관 및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에 대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재정·세제상 지원 및 의료연구개발 활성화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을 것
5. 부지 확보의 용이성 : 토지 이용 관련 규제, 토지 가격 등에 비추어 부지 확보가 쉽고 효율적일 것
6. 국토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 :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구체적인 범위와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2조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등의 산정)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사용료·수익료 및 대부료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평정(評定) 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 (국·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매입대금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는 연 100분의 4를 넘을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용자 및 지방채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

다.

- ②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결과

부서명	검토 의견			조례안 반영
	제정안	검토안	사유	
법무통계 담당관실	제12조(입주기관 지원센터 설치·운영) ① 첨단의료 복합…(생략)	제12조 삭제	‘행정기구설치’는 의원발의 대상이 아님	검토안 반영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충청북도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제1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 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충청북도통합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	
회계과	제28조(입주기관 환경개선 지원)	제28조제2항과 제29조 삭제	조례안 제28조 제2항은 「첨복단지	검토안 반영

<p>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을 임대 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와 사용 요율은 …(생략)</p> <p>제29조(공유재산 의 사용·수익· 대부 및 매각 등 의 특례) (생략)</p>	<p>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p> <p>제29조제1항 부터 제5항까지는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각각 명시되어 있음 (중복)</p>	
--	--	--

※ 예산담당관실, 세정과, 바이오사업과, 청원군은 의견 없음